

교회 대상 캐나다
장로교회 가입안내서



A Guide for Congregations
Considering Membership with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교회 대상 캐나다 장로교회 가입안내서

A Guide for Congregations Considering Membership with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캐나다 장로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에 가입하려는 많은 분들을 캐나다 장로교회는 늘 진심으로 환영하며 함께 하였습니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그리스도인들 및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한 마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교회는 참으로 풍성해집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에 가입하는 분들은 캐나다 곳곳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도움을 나누며,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시는 교회를 위해, 우리 교단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캐나다 장로교회의 교회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몇 가지 방침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사용되는 주요 자료 및 방침에 대한 요약설명이 본 안내서 말미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의 정체성 (Who We Are)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합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다가올 앞 날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성경말씀의 진리와 영감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삼위(성부·성자·성령)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한다고 믿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걸쳐 캐나다 장로교회에 속한 900여 교회가 있으며, 그 구성원들은 다양한 문화적·인종적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장로교회에 속한 다양한 문화권의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랍어(Arabic), 광둥어(Cantonese), 크리족어(Cree-캐나다 원주민 언어), 영어(English), 에피크어(Efik-나이지리아의 에피크족 언어), 필리핀어(Filipino), 불어(French), 가어(Ga-가나 언어), 힌두어(Hindi), 헝가리어(Hungarian), 이보어(Ibo-나이지리아 언어), 한국어(Korean), 중국 표준어(Mandarin), 오지브웨어(Ojibwe), 포르투갈어(Portuguese), 펀자브어(Punjabi), 스페인어(Spanish), 대만어(Taiwanese), 트위어(Twi-가나 언어), 우르두어(Urdu-파키스탄 공용어) 등

캐나다 내에는 캐나다 장로교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장로교단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의 교회 관할방식 (Governance)

교회법(Book of Forms)

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규정은 교회법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회법은 오랜 기간에 걸쳐 기록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개정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단을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새롭게 이해하게 될 때마다, 교회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교회법 중 변화의 필요성이 인지되는 부분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관할하기 위한 네 가지 형태의 의결기관(court)이 있습니다. 이는 당회, 노회, 대회 및 총회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캐나다 장로교회 교회법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www.presbyterian.ca).

당회 (The Session, 교회법 105-138.1)

장로교회의 교회 운영 및 통치방식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 교단이 교회 운영방식의 고유한 특성으로 널리 알려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 교인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Presbyterian은 연장자 혹은 장로를 의미하는 그리스 단어 “presbuteros”가 그 어원입니다.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관할의 책임을 맡는 교회입니다. 각 교회마다 목사 혹은 목회자라 불리는 “가르치는 장로(teaching elder)”가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사역 및 성례전의 집례를 담당하도록 안수를 받습니다. 남·녀 공히 말씀사역 및 성례전의 집례를 담당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다스리는 장로(ruling elder)”가 있습니다. 남·녀 교인 공히 안수를 받고, 다스리는 장로로 일할 수 있습니다. (Book of Forms 132-133.2) 이들은 목사와 함께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인들을 지도하고, 목회적 사랑과 도움을 함께 나누며, 또한 교회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통틀어 당회라 칭합니다.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장로의 직분은 선거의 과정을 통해 남·녀 교인에게 주어집니다. 장로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섬기는 지도자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로 선출된다는 것은 한 개인이 이렇듯

섬기며 지도력을 발휘하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이 식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로는 일종의 특권 내지는 지위 상승을 누리는 것과 관련된 직분이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설명된 것처럼, 장로는 자신이 섬기며 돌보아야 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안수를 받을 때, 장로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서약합니다. 또한 캐나다 장로교회의 규범과 관할 방식에 따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에 대한 서약을 합니다. 장로는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교회의 상위 의결기관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당회는 종신직 혹은 임기직의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종신직은 장로로 선출되면, 일정한 임기기간의 제한 없이 시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 장로로 선출되면 6년을 한 임기로 하여 장로로서 시무하게 됩니다. 매 6년이 지날 때마다 재선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종신직과 임기직 어느 경우에도 장로는 일정기간의 휴무를 신청하거나 사임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당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받는 안수 자체에는 그 효력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당회는 당회원들만이 모이는 비공개 모임의 형태를 갖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당회의 초청을 받아 당회원 이외의 사람들이 당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당회 모임을 비공개로 갖는 이유는, 교회에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또한 당회원들간의 결속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교회 전체에 정보를 공개하여서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한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을 교인들이 미리 알게 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당회 모임을 비공개로 갖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당회원들간의 결속력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당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혹시 그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던 당회원이 있었다고 해도, 당회에서 내려진 결정을 위해 모든 당회원이 한마음이 되어, 공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다른 당회원들과 의견대립을 빚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에 대해 고려하지만, 당회가 말할 때는 한 목소리를 발해야 합니다. 당회에서 내리는 결정을 정기적으로 교인들에게 알리며 소통하는 것은 당회가 신중하게 여러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당회는 장로 중 한 사람을 대표장로(representative elder)로 지명하여 목사와 함께 당회의 상위 의결기관인 노회에 참석하게 합니다.

관리위원회(The Board of Managers, 교회법 158-173)
 당회 이외의 교회조직으로,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열리는 공동의회에서 선출되며, 교회건물 관리 및 재정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당회와의 협의하에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 초안을 작성합니다. 관리위원회는 당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당회 내에 재정부 및 관리부를 두어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Book of Forms 113.6.5).

제직회 (The Deacon's Court, 교회법 135-138.1)
 관리위원회 대신 제직회를 조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직회는 구제(救濟)의 업무를 겸하여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위원 (Trustees, 교회법 149 부록 항목 C)
 자산관리위원은 교회자산을 신탁의 형태로, 자산관리위원과 교회간의 신탁 합의사항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선출된 교인입니다. 교회법 부록항목C에는 자산관리위원과 교회간의 신탁 합의사항의 실례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노회 (The Presbytery, 교회법 176-258.6)
 노회는 노회 내 교회에 속한 목사와, 동수의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장로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노회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여러 교회와 목사를 돌보며 감독하는 일을 그 주목적으로 삼습니다. 노회 내의 목사와 장로는 노회의 여러 결정사항에 투표권을 갖는 노회원(the constituent roll of the presbytery)으로 등록됩니다. 은퇴한 목사나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없는 목사의 경우 준 노회원(the appendix to the roll)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회 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는데 보통 정기적으로 매달 한번, 혹은 2달에 한 번 간격으로 갖습니다.

대부분 노회는 지역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역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두 노회가 있습니다. British Columbia주(州)에서 Manitoba주(州)까지 포함하는 한카서부노회와 Ontario주(州)에서 Newfoundland주(州)까지 포함하는 한카 동부노회가,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되지 않은 노회입니다. 한카동부노회와 한카서부노회는 한국어 문화권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노회입니다. 위 두 노회 모두 캐나다 장로교회 내 다른 노회들의 관할방식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 운영됩니다.

노회장(moderator)은 노회의 투표권이 있는 노회원 중에서 매년 임명됩니다. 노회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회 회의가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회에서는 노회서기를 임명합니다. 노회서기는 회의록 기록 등을 담당하는 행정직입니다. 또한 노회서기는 서신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의결기관관련 문서(court documents)를 관리 하는 등 여러 책임을 맡게 됩니다. 노회의 모든 회원은 동등한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교회와 목사는 노회를 지지하며 노회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교회와 목사는 노회를 비롯한 상위 의결기관(the higher courts of the church)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내의 의결기관(court)은 교회법관련 사안을 처리하고, 캐나다 장로교회의 여러 규정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관할지역 내의 교회 및 목사를 목회적으로 살피고 돕는 일을 담당합니다.

대회 (The Synod, Book of Forms 259-276)

캐나다 장로교회 내의 여러 대회는 Ontario주(州)와 the Atlantic 주(州)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주(州)경계를 따라 구분됩니다. 대회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노회 및 교회의 사역을 감독하는 책무와 아울러 청소년사역·캠핑사역 및 대회가 고용한 교회 사역자들의 사역을 감독하는 일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대회의 역할을 통해 해당 지역 내의 목회자들 및 장로들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깊어지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총회(The General Assembly, Book of Forms 277-312)

총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총회는 노회원자격을 지닌 목사의 6분의 1 및 동수의 대표장로로 구성됩니다. 총회에 참석하는 장로와 목사는 총대(commissioner)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각 노회는 이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양심을 따라 여러 사안에 대해 분별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총회가 열리는 기간 날마다 하루 전체의 일정은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됩니다.

총회는 일년에 한 차례씩 개최되며 다음 년도의 총회가 열리기까지 관련 업무는 캐나다 장로교회내의 the Assembly Council 이나 the Life and Mission Agency와 같은 여러 기관(Agency)에서 수행합니다.

교인자격 안내 (Congregational Membership, 교회법 139-157.1)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회의 승인하에, 장로교회 교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세례를 받을 때는 본인의 신앙고백이 수반되어야 하며,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한 교인 (professing member) 즉 세례교인이 됩니다. 세례를 받는 교인은 당회의 인도를 존중하고 따를 것이며,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복된 공동체로 자라가는 데 힘쓸 것이라 서약합니다. (교회법, 139-148)

영유아(嬰乳兒)가 세례를 받는 경우 이들은 유아세례교인(covenant member)이라 칭합니다. 유아세례교인은 성장한 후, 부모 혹은 보호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했던 신앙 고백을 이제는 스스로 하도록 권면을 받습니다. 이렇게 직접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유아세례 교인이 세례교인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세례교인은 목사를 청빙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를 갖으며 장로·집사 및 자산관리위원(Trustee)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로를 비롯한 교회 직분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 또는 교회자산 처분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할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위 의결기관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아세례교인은 이러한 권리를 갖지 못하나, 성년이 되어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는 경우, 공동의회에서 교회의 재정관련 사안에 대한 투표권을 갖습니다.

장로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공식적인 등록 절차를 갖지 않은 채 교회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은 이전에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교인들을 출석 교인 (Adherents)이라 합니다. 세례교인으로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행사에 참여하는 등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입니다.

출석 교인은 장로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또한 목사를 청빙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청빙에 대한 투표권 등 청빙 사안에 대한 교회법적 참여 권리는 없습니다. 청빙에 관한 사안은 성경말씀 및 교회의 가르침의 권위를 존중하고 교단의 관할방식을 따르겠다고 서약한 교인들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석 교인이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회의 재정관련 사안에 대한 투표권을 갖습니다.

교회가 캐나다 장로교회에 가입하는 경우 (Congregations Joining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일군(一群)의 그리스도인들이 캐나다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노회의 서기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회에서는 가입신청을 한 교회의 지도자 및 교인들을 만나 캐나다

장로교회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입신청을 한 교회에서 캐나다 장로교회 및 해당 지역 노회에 속한 교회가 됨에 따르는 혜택 및 책임이 무엇인지 충분히 잘 알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교육과정(Instructional Sessions)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교회의 신청을 노회에서 승인하면, 이 사실을 알리는 특별예배를 드립니다. 노회에서는 가입이 승인된 교회에서 ‘한시적으로 일하게 될 장로(assessor elders)’를 단수 혹은 복수로 임명하여 파송합니다. 파송된 장로는 해당 교회가 캐나다 장로교회의 운영방식과 문화에 익숙해 지며 필요한 경우 교인들 중에서 장로를 선출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적응과정을 돕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에 가입된 교회의 경우, 교회의 재정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고, 노회와 대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부담금을 부여 받습니다. 이러한 재정 평가 및 부담금 설정은 의무사항입니다. 각 교회는 부담금 이외에도 Presbyterians Sharing에 기부하도록 권고를 받습니다. Presbyterians Sharing은 캐나다 국내 또한 국외의 여러 선교활동 및 사역이 지속되게 하는 전국적 규모의 교단예산입니다. 총회에서 Presbyterians Sharing 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면, 각 교회에서 담당하게 될 예산액이 추산됩니다. 이를 추산 할당액(expected allocation)이라 부릅니다. 추산 할당액에 관한 정보는 총회 본부(the National Office) 내의 Stewardship 부서에서 각 노회 및 교회로 전합니다. 추산 할당액에 기초하여, 각 교회에서는 교회의 현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노회에 전달합니다. 이를 수용 할당액(accepted allocation)이라 부릅니다. 이후 노회에서는 이 수용 할당액에 관해 취합된 정보를 총회본부에 전달합니다. 각 교회가 Presbyterians Sharing에 성심껏 기부하며 동참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단이 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부를 통해 여러 선한 일들이 성취됩니다. 이와 같은 각 교회의 협력이 있어야만, 우리 교단의 여러 중요한 사역이 국내·외에서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노회의 관계 (Congregational Relationship with the Presbytery)

위에 언급된 것처럼, 노회는 목사와 교회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장로교 관할방식의 훌륭한 점은 특정 개인이 아닌 의회(council)나 의결기관(court)이 관할의 책임을 맡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공조(共助) 및 전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분별의 과정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한 개인에게 의사결정의 권한이 집중되어서는 안됩니다.

노회에서는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의 예배처소를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교회라 해도 신설(新設)교회로 간주됩니다. 일단 한 교회가 캐나다 장로교회의 소속이 되면, 다시 교단을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나 교인이 개인적으로 교단을 떠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교회가 캐나다 장로교회의 교회로 설립된 이후에는 노회의 관할 아래 있게 되므로, 노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교단과의 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교회자산 (Church Property)

교회자산은 교회의 소유이며, 교회에서 임명한 ‘자산관리위원들(trustees)’이 보유·관리합니다. 교회에서 시설확장을 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여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노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법 151)

교회 건물에 대한 중요한 수리 및 보수, 새로운 건물 건축에 대한 계획안은 교회 건축위원회(the Committee on Church Architecture)에 제출되어야 하며 교회 건축위원회 및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해산되는 경우, 교회자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말씀 드립니다. 노회에서 교회가 해산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면, 교회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교회 건물·건물 내에 보관되어 있는 교회 사용물·사택·은행 예금액 및 투자액 [bank accounts and investments])은 캐나다 장로교회 내의 자산관리 위원회(The Trustee Board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에 귀속됩니다.

그 밖의 캐나다 장로교회 주요 방침 (A Few Other Policies)

캐나다 장로교회에는 사도바울이 권고했던 대로, 우리가 함께 단정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한 여러 방침이 있습니다. “성적 학대 및 성추행관련 방침 (Policy on Sexual Abuse and/or Sexual Harassment)” 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적 학대를 받았거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 피해를 호소할 수 있게 하는 방침입니다.

“돌보는 사랑으로 인도하기(Leading with Care)” 방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방침은 교회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안전한 곳이 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캐나다 장로교회는 “인종차별문제 관련 방침(Policy on Racial Harassment)”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방침은 성적 학대 및 성추행의 문제에 대한 방침과 유사한 방식으로, 교회 내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및 학대에 관한 문제사항을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목사가 캐나다 장로교에 가입하는 경우 (Ministers Joining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타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이후 캐나다 장로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훌륭한 목회자들을 캐나다 장로교회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기쁨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목사가 캐나다 장로교회에 가입하여,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직분을 맡기까지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필요한 두 단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교육 및 가입위원회(The committee on Education and Reception)에서 캐나다 장로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사의 **적격여부**를 심사합니다. 해당 목사의 가입 신청이 승인될 때, 조건부 혹은 무조건부로 신청인의 가입이 결정됩니다. 조건부 승인으로 가입된 경우, 요구된 사항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2.첫번째 과정을 마친 목회자는 이제 **캐나다 장로교회 내에서 자신이 부름 받는 사역이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한 교회에서 노회의 승인하에 목사를 청빙하려 하고 목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목사는 위임을 받고 노회회원 명부에 그 이름이 기입됩니다.

첫번째 단계를 시작하려면, 캐나다 장로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사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노회에 서신을 보내어 자신의 가입 신청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캐나다 외부에 거주하는 목사가 캐나다 장로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캐나다 장로교회 노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교육 및 가입위원회(The committee on Education and Reception)에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의 일원이되고자 하는 신설(新設)교회(new congregations)의 목회자의 경우 이와 동일한 두 단계의 과정을 갖습니다. 먼저 노회에서 가입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의 사역은 노회에서 감독하며, 목사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교회가 아니라 노회에 대해 최종적 책임을 갖게 됩니다. 목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목사의 사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교인들이 있는 경우, 당회에서 서면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당회로 제출된 문서를 당회에서는 노회로 전달합니다. 당회에서는 목사에 대해 제기된 불만 사항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빙을 받은 목사의 사례금은 적어도 총회에서 규정한 최저사례금 기준에 따라 지급되도록 교회가 약정합니다. 총회의 최저사례금 기준보다 높게 설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노회들도 있습니다. 목사는 비상근(非常勤) 근무형태(part-time ministry)로 일하도록 부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반일 근무(半日勤務, half-time) 이하의 근무 형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상근으로 일하는 경우 사례금 및 혜택은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건강 및 치과보험료 또한 연금보험료(pension premium)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청빙을 위해 교회가 담당해야 할 책임의 한 부분입니다. 목사는 사례금 중에서 일정액을 교단 연금제도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의료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자진해서 지불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목사청빙 (Calling a Minister)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 노회에서는 임시당회장(interim moderator)을 임명하여 그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임시당회장은 목회자가 청빙을 받는 과정에 함께 하여 도움을 줍니다. 교회법에 소개된 청빙절차 및 “목사청빙”(Calling a Minister) 자료문서의 안내사항을 따라 청빙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 임시당회장은 사실상 그 교회의 담임목사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준비가 되었을 때, 임시 당회장은 당회와 관리 위원회 및 교회 내 여타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교인들이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돕습니다. 청빙위원회에서는 당회와 함께 교회소개서 (congregational profile)을 작성합니다. 교회소개서는 해당 교회에서 자신들의 현재 모습 및 필요사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청빙공고를 낸 이후에 지원자들의 지원서류를 받게 되면, 어떠한 지원자가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로 일하기에 가장 적합할 것인지 청빙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관례적으로 청빙위원회에서 일인 후보를 선정한 후 당회에 추천을 합니다.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릴 때,당일 설교하도록 초청을 받은(preach for the call) 목사는 교회 내의 여러 사람들과 만남을 갖으며, 예배시간 중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배 후 공동의회를 갖고, 당일 교회에 모인 세례교인들이 ‘청빙 위원회에서 추천한 목사를 청빙할 것인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청빙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이 결정은 노회에 전달됩니다. 노회에서 청빙을 승인하면 노회의 결정은

교회의 청빙을 받은 목사가 속한 노회로 전달됩니다. 목사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노회 역시 이 결정에 대해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목사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노회에서도 청빙을 승인하면, 목사의 위임예배 일자가 결정됩니다. 청빙을 받은 목회자가 아직 안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사안수예배를 겸한 위임예배를 드립니다.

부언

본 안내서에서 말씀 드린 내용은 캐나다 장로교회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노회가 마련하는 관련

강좌를 수강하셔서 캐나다 장로교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The Elder's Institute와 같은 웹사이트, 또한 총회 서기직(the Clerks of Assembly)을 맡은 분들이 편찬하는 정기간행물 “For Elders” 등의 유용한 자료가 있습니다. 총회본부 (the national office) 건물 내의 서점(The Book Room)에서도 교회법 책자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교회법의 전체 내용을 인터넷 상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본 안내서가 캐나다 장로교회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에 함께 하시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자료 및 방침

아래 소개되는 자료는 www.presbyterian.ca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각 지역 노회 혹은 총회서기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800-619-7301

항목	사용 가능 자료 및 설명
신앙의 기준 (Standards of Faith)	신구약 성경·산 믿음(Living Faith의 한국어 및 불어 번역본 사용 가능)·웨스트 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외에도 신앙의 기준이 되는 다른 여러 자료가 교회법 책자 내 “역사적·신앙적 기반”(Historical and Confessional Base)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회관할방식 (Governance)	교회법 (교회법 전문이 www.presbyterian.ca 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적 학대 문제 관련 방침 (Sexual abuse policy)	성적 학대 및 성추행관련 방침 (Policy on Sexual Abuse and/or Sexual Harassment)에서는 ‘캐나다 장로교회가 위 사안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성 범죄 혐의가 제기된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의 안전관련사항 (Safe Church Policy)	돌보는 사랑으로 인도하기(Leading with Care): 어린이·청소년 및 자기 보호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성인들의 안전이 캐나다 장로교회 내에서 보장되게 하고자 마련된 방침입니다.
교회자산 관련 법규 (Church Property act)	연방의회 제정법(Federal Act of Parliament)이 자산관리위원회(The Board of Trustees)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연방의회 제정법에서는 ‘한 교회가 해산되는 경우 남아 있는 모든 교회 자산은 교단 내의 자산관리위원회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명기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캐나다 장로교회로 설립된 이후에는, 교회자산을 유지한 상태로 캐나다 장로교회를 탈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 사례금관련 방침 (Stipend Policy)	교회에서는 적어도 총회에서 제정한 최소사례금 기준을 따라 목회자 사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총회의 최저사례금 기준보다 높게 설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노회들도 있습니다.
교회연금 (Church Pensions)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는 교단 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연금의 고용인 부담금을 캐나다 장로교회에 지불해야 하며 또한 목회자 부담금을 목회자로부터 받아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교회의 재정적 의무사항 (Congregational financial obligations)	노회 및 대회는 운영예산을 얻기 위해, 이를 위한 재정 부담금을 교회에 의무적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Presbyterians Sharing 기금	각 교회는 전국적 규모의 교단예산인 Presbyterians Sharing에 기부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총회본부에서는 노회를 통해 “추산 할당금”의 금액을 각 교회에 전달합니다.
목사청빙 (Calling a minister)	목사청빙에 관한 사안들은 노회에서 합의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목사청빙(Calling a Minister)”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교단 소속 목사가 청빙을 받는 경우 (Receiving a minister from outside the PCC)	총회에서 교육 및 가입위원회를 통해 해당 목사의 캐나다 장로교회 가입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인정 한 후에, 노회에서는 캐나다 장로교회 이외의 교단에 속해 있던 목사가 청빙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총회본부 내의 Ministry and church Vocations 부서에서 교육 및 가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노회의 결정에 따른 목사와 교회의 목회적 유대 관계 중단시 사례금 지급 (Payment when presbytery dissolves pastoral tie with minister)	“목회적 유대관계 중단에 관한 방침(The Policy on the Dissolution of the Pastoral Tie)”에서는 교회의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거나, 노회에서 목사와 교회의 목회적 유대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 목사의 목회사역이 중단되는 경우, 목사에게 사례금을 일정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연락처	교환 번호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50 Wynford Drive Toronto, Ontario M3C 1J7 1-800-619-7301 or 416-441-1111 Website: presbyterian.ca	Clerks of Assembly, ext. 226 Financial and Support Services, ext. 320 Pension and Benefits, ext. 287 Ministry and Church Vocations, ext. 264

Dated: March 27, 2014